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 ·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 : 정병용 의원

제출일 : 2024. 2. .

1. 제안이유

○ 「국민체육진흥법」개정으로 체육회가 독립법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하남시체육회 및 하남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체육행사를 사용료 감면 대상에 추가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함.

2. 주요내용

○ 사용료 감면 대상에 '체육행사' 추가 규정(안 제11조제1항2호가목)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 (전문위원 한종수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사용료 감면 대상에 하남시 체육회 및 하남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체육행사를 추가 규정함 으로써 하남시민의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와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검토 결과,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됨.